

2022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1. 2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6.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1. 11.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출연대상 : 마포복지재단
- 2) 출연 필요성
 -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보통재산 출연 지원
 - 지역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모금·배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3) 출연금액 및 내용

- 출연금액 : 1,499,181천원
- 출연내용 : 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지원
 - 기본재산 : 1,000,000천원
 - 보통재산 : 499,181천원
 (인건비 334,032천원, 운영비 145,916천원, 사업비 19,233천원)

【 출연금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내용	비고
합계	1,499,181		
복지재단 기본재산	1,000,000	· 기본재산 적립	
복지재단 보통재산	499,181		
복지재단 운영	인건비	334,032	· 기본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운영비	145,916	· 사회보험료, 급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 광열비, 도서인쇄비, 회의운영비, 소모품비 등
	사업비	19,233	· 복지재단 홍보 및 나눔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초기사업비

※ 출연동의안 구의회 의결 후,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의·결정

3. 검토보고 (박춘주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마포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포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규정에 의거 예산의 출연이 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조에 따라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

○ 재단 출연금액 및 내용

- 2022년도 출연금은 1,499,181천원으로 복지재단 기본재산 10억 원과 보통재산 499,18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본재산은 4년 동안 50억 원 출연을 목표로 2021년에 최초로 20억 원 출연에 이어 내년에는 1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 예정이고,

〈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계획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본재산	5,000	2,000	1,000	1,000	1,000

- 보통재산은 마포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7명) 334,032천원, 운영비 145,916천원, 사업비 19,233천원 등 총 499,181천원을 산정하여 출연할 예정임.

○ 마포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11월 2일 출범한 마포복지재단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설립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의회에서 재단 설립 시 우려하였던 사항과 집행부에서 요구하였던 재단설립 필

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구민에게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1. 마포복지재단 설립 개요**
2. 관계법령

【붙임1】 설립개요

마 포 복 지 재 단 설 립 개 요

- 명 칭 : 마포복지재단
- 설립형태 : 자치구 출연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
- 설립주체 : 마포구
- 설 립 일 : 2021년 11월 2일
- 기본재산출연 : 50억원
 - '21년 20억 출연, 이후 매년 10억씩 3년간 출연 예정
 - ※ 시 설립허가 기본재산 최저기준 : 20억원
- 운영재원 : 구 출연금, 이자수입, 후원금, 기타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구출연금)
-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이사회, 감사, 사무국
 - 임 원 :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 직 원 : 2개 팀 7명
- 주요사업 (우선순위)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모금·배분)
 -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 사업
 - 지역복지 역량 강화 및 복지공동체 강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 · 관리
 - 지역복지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